

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(제1차 교육위원회) 2020. 4. 23.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수 석 전 문 위 원

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- 1. 발 의 자: 서동학 의원 등 6인
-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 - O 발의일자: 2020년 4월 13일
 - O 회부일자: 2020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○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학교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 (현행)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(변경)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
- O '각급학교'를 '학교'로 변경함(안 제2조, 제3조, 제6조)
- O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교통안전 시설 설치와 유지·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

가. 주요내용 검토

O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 「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

통안전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고,

○ 학교 내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내에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유지·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 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종합 검토의견

- 최근 학교 내 교통사고가 잦아지고 있지만, 현행 도로교통법(제 12조제3항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)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(제3조 처벌 특례) 상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는 학교 내 운동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 개정 등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,
- 2019. 7. 2. 차량이 통행하는 교문 및 도로에는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고,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 턱이나 가드레일 (guardrail) 등을 설치하도록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임.
-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학교 내 보·차도 설치 및 유지· 관리 체계 마련과 그 시행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전체적으로 조례안의 구성과 내용이 상 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을 준수하고 있어,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.